

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95호		
의안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		
제출자	서초구청장(기획예산과)	제출년월일	2019. 3. 20.
위원회	행정복지위원회	전문위원	심경석

I. 제안내용

-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II. 주요골자

1. 세입

- 부동산교부세 및 세외수입(구금고협력사업비) 증가분

2. 세출

- 구정 주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

III. 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	기정예산	증(△)감액	증감률
합계	663,037,016	655,207,016	7,830,000	1.20%
일반회계	601,333,619	593,713,619	7,620,000	1.28%
특별회계	61,703,397	61,493,397	210,000	0.34%
의료급여기금	320,043	320,043	0	0.00%
건축안전	210,000	0	210,000	순증
주차장	61,173,354	61,173,354	0	0.00%

IV. 검토사항

추가경정예산안 총괄

1. 총 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기정예산	증(△)감액	증감률
합 계	663,037,016	655,207,016	7,830,000	1.20%
일 반 회 계	601,333,619	593,713,619	7,620,000	1.28%
특 별 회 계	61,703,397	61,493,397	210,000	0.34%
의료급여기금	320,043	320,043	0	0.00%
건축안전	210,000	0	210,000	순증
주차장	61,173,354	61,173,354	0	0.00%

-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.2%인 78억 3천만원이 증가한 6,630억 3,701만 6천원으로,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.28%인 76억 2천만원이 증가한 6,013억 3,361만 9천원이며,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.34%인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617억 339만 7천원임.

2. 세입예산안

□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	기정예산		증(△)감	증(△)감률 (%)
	예산액	구성비 (%)	예산액	구성비 (%)		
계	601,333,619	100.00	593,713,619	100.00	7,620,000	1.28
지 방 세	232,578,487	38.68	232,578,487	39.17	0	0
세 외 수 입	85,087,885	14.15	81,207,885	13.68	3,880,000	4.78
지 방 교 부 세	12,501,800	2.08	8,761,800	1.48	3,740,000	42.69
조정교부금 등	24,060,642	4.00	24,060,642	4.05	0	0
보 조 금	191,506,805	31.85	191,506,805	32.26	0	0
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	55,598,000	9.25	55,598,000	9.36	0	0
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

-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의 13.68%인 812억 788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, 38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14.15%인 850억 8,788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,
-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의 1.48%인 87억 6,180만원이 편성되었으나, 37억 4천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2.08%인 125억 180만원이 편성되었음.

□ 특별회계

(단위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	기정예산		증(△)감	증(△)감률 (%)
	예산액	구성비 (%)	예산액	구성비 (%)		
계	61,703,397	100.00	61,493,397	100.00	210,000	0.34
세 외 수 입	18,663,130	30.25	18,663,130	30.35	0	0
보 조 금	509,043	0.82	509,043	0.83	0	0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42,531,224	68.93	42,321,224	68.82	210,000	0.50

○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

-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기정예산의 68.82%인 423억 2,122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나,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여 추경예산안의 68.93%인 425억 3,122만 4천원이 편성되었음.

3. 세출예산안

-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76억 2천만원이 증가했는데, 이중 운영위원회 소관이 1개 부서에 6,993만원 증가,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7개 부서에 123억 5,839만 1천원 증가하였으며,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0개 부서에 48억 832만 1천원이 감소되었음.
- 특별회계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건으로 2억 1천만원이 증가됨.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추경예산안		기정예산		증(△)감	증(△)감률 (%)
	예산액	구성비 (%)	예산액	구성비 (%)		
합 계	663,037,016	100.00	655,207,016	100.00	7,830,000	1.20
일 반 회 계	601,333,619	100.00	593,713,619	100.00	7,620,000	1.28
의 회 사 무 국	4,695,409	0.78	4,625,479	0.78	69,930	1.51
감 사 담 당 관	230,031	0.04	230,031	0.04	0	0
홍 보 담 당 관	4,781,591	0.80	4,781,591	0.81	0	0
문 화 행 정 국	181,081,328	30.11	172,285,878	29.02	8,795,450	5.11
밝 은 미 래 국	122,080,822	20.30	118,593,381	19.97	3,487,441	2.94
주 민 생 활 국	183,157,728	30.46	183,082,228	30.84	75,500	0.04
기 획 재 정 국	8,685,171	1.44	17,729,637	2.99	△9,044,466	△51.01
도 시 관 리 국	26,751,079	4.45	23,840,269	4.02	2,910,810	12.21
안전건설교통국	39,863,421	6.63	38,538,086	6.49	1,325,335	3.44
보 건 소	30,007,039	4.99	30,007,039	5.05	0	0
특 별 회 계	61,703,397	100.00	61,493,397	100.00	210,000	0.34
의 료 급 여	320,043	0.52	320,043	0.52	0	0
건 축 안 전	210,000	0.34	0	0	210,000	순증
주 차 장	61,173,354	99.14	61,173,354	99.48	0	0

행정복지위원회 소관

1. 총 규모

-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.58%인 123억 5,839만 1천원이 증가한 4,916억 5,154만 3천원으로,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.58% 증가한 123억 5,839만 1천원이며,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기정예산	증(△)감액	증감률(%)
합 계	491,651,543	479,293,152	12,358,391	2.58%
일 반 회 계	491,331,500	478,973,109	12,358,391	2.58%
특 별 회 계	320,043	320,043	0	0
의료급여기금	320,043	320,043	0	0

2. 세입예산안

- 해당 없음.

3. 세출예산안

-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3억 5,839만 1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-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부서 (추경안 쪽수)	사 업 명	최종 예산안	2018 기정예산	추경안 증(△)감액
문화예술과 (p151)	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(구금고 협력사업비)	3,880,000	0	3,880,000
	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	900,000	0	900,000
자치행정과 (p152)	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-타당성조사 용역비	25,000	0	25,000
	양재도서관 건립	6,384,000	2,799,000	3,585,000
	-자료구입, 개관준비팀 인건비 및 운영비	725,375	0	725,375
	-건축공사비	4,937,000	2,799,000	2,138,000
	-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및 물품구매	721,625	0	721,625

부서 (추경안 쪽수)	사업명	최종 예산안	2018 기정예산	추경안 증(△)감액
교육체육과 (p153)	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	405,450	0	405,450
가족정책과 (p157)	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	343,700	0	343,700
일 자리 과 (p158)	공공근로사업 추진 -인건비	1,955,464	1,574,797	380,667
어르신행복과 (p159)	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-기본 및 실시설계비	535,214	0	535,214
	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	50,000	0	50,000
	방배느티나무쉼터건립 추진	860,860	458,000	402,860
	복합복지타운 조성 -기본계획수립 용역	450,000	0	450,000
	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	2,825,000	1,500,000	1,325,000
여성보육과 (p163)	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	75,500	0	75,500
	-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 구매	70,000	0	70,000
	-행사지원 차량 유지관리	5,500	0	5,500

- 특별회계 : 해당 없음.

V. 검토의견

1.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

○ 구정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자,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됨.

2. 주요 사업예산안 검토

□ 일반회계 세입(편성재원)

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편성재원은 총 7,620,000천원이며,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.

□ 일반회계 세출

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추가경정 예산은 총 12,358,391천원으로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,

○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(문화예술과) 3,880,000천원

- 서초음악지구 지정에 따라 문화지구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·효율적인 재정보호와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2019.2.7일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·시행하였음.
-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근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전출금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서, 같은 조례 제3조(기금의 재원 및 보고)제1호 “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출연금”에 따라 편성 가능한 예산이며, 기금의 용도는 문화지구 운영협의체 운영 지원 등 문화지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,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용자 등 6가지 항목의 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임.
- ▶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세부 지출계획은 ‘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(p.3)’ 참조

○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(문화예술과) 900,000천원

- 본 사업은 객석 단차공사를 통한 공연장 가시선을 확대하고 공연장 음향 및 영상 시스템 보강을 통해 관람 환경 개선 및 관객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.
- 443석 규모의 반포심산아트홀은 관람 시야 개선에 대한 관객 및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연 또는 영화 관람객 22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단차가 없는 객석 형태로 인해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

68%인 것으로 조사되었음.

- 불편한 객석 환경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어려워 경영실적의 악화 및 낮은 후원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객석의 단차공사를 통해 공연장 가시선을 확대하고 공연장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을 보강을 통해 관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객석 리모델링 컨설팅비 17,830천원, 설계 및 감리비 65,000천원, 공연장 시공비 817,170천원을 포괄로 계상하였는바,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(자치행정과) 25,000천원

- 현재 임시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초3동 주민센터를 공영주차장 부지와 통합하여 신축하여 서초3동의 주차난 해소 및 행정·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임.
- 금년 내에 부지매입 완료 후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경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.
- 타당성조사용역비의 세부 산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, 인건비는 '2019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(행안부)'를 적용하였고,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였으며, 유인물비는 조달청 인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양재도서관 건립(계속비) (자치행정과) 3,585,000천원

- 「도서관법」 제27조(설치 등)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설립·육성하여야 하며,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여됨.

- 양재도서관 건립 사업은 양재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, KCC에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KCC에서 설계비 및 골조공사(터파기 등)를 부담(4,000,000천원 상당)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시비(1,051,000천원)와 구비(6,744,000천원)가 투입되는 사업임.
- 금번 추경 편성 사유는 구비 6,744,000천원 중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3,159,000천원을 제외한 부족분 3,585,000천원을 추경에 편성함.

○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확대 (교육체육과) 405,450천원

- 권역별(서초권, 반포·방배권, 양재권)로 어린이 얼음썰매장을 확대 운영하여 잊혀져가는 동절기 민속놀이 체험과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통해 부모와 아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.
- 본 사업은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1개소(형촌천·양재천 합류부 저류지)에 얼음썰매장을 운영하였으며, 2018년도 썰매장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이용자는 총 9,249명(평일 평균 100명, 휴일 평균 268명)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도 운영실적(총 3,540명, 평일 평균 41명, 휴일 평균 150명)에 비해 이용실적이 총 이용자 기준 약 2.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. 또한 얼음썰매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 인원 248명 전원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집에서 가까운 곳에 얼음썰매장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 건의가 총 43건 접수되는 등 얼음썰매장의 확대 설치요구를 감안하여 2019년에는 용허리공원과 반포종합운동장 2개소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3개소에서 얼음썰매장을 확대·운영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함.

○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 (가족정책과) 343,700천원

- 퇴직교사,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 등 지역 내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만 18세 미만 아동을 연계하여 사회봉사 및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.
-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학업능력·진로 등 대상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아이들이 동등한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, 정서, 진로, 문화, 생활상담 등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.
-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(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)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·정서 발달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퇴직교사,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멘토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공공근로사업 추진(추가) (일자리과) 380,667천원

- 실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해 실직자와 저소득 주민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.
- 추정 편성 사유는 당초 참여인원을 188명(반기별 94명)을 예상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, 참여율이 높아 참여인원을 300여명(반기별 150여명)으로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부족한 인건비 380,667천원을 추경으로 편성함.

○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(계속비) (어르신행복과) 535,214천원

- 서초 보금자리주택 입주완료에 따라 우면지역의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면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,
- 금년도 본예산에서 부지활용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임시 편익시설 운영·행사운영비만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, 2018.10.31일 건립부지 매입비 완납 및 2018.11.27일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비 535,214천원을 추경에 편성함.
- 설계비의 산출근거는 '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(2017)'의 설계비 책정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시설의 종류(노인복지센터)·연면적(3,000㎡~5,000㎡) 등 시설의 특성에 부합되는 유형별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(어르신행복과) 50,000천원

- 본 사업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서초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서초구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하는 사업임.
- 2019.3.26일 제정·시행된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」 제12조(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)에 따라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정책연구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.
- 고령친화도시 실태 면접조사비 15,000천원, 연구인건비 20,000천원, 유인물 발간비용 8,000천원 등을 포괄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유사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추정한 것으로 사료됨.

▶ 서울시(75,000천원), 도봉구(35,000천원), 노원구(50,000천원)

○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추진(추가) (어르신행복과) 402,860천원

- 방배권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·여가·건강·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느티나무 쉼터를 확대·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,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및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시설설치) 규정에 따라 노인과 구민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·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복합시설임.
- 본 사업은 2019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454,292천원이 감액된 사업으로서,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부족한 건립비 402,860천원을 추경에 편성함.
- 설계비의 산출근거는 '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(2017)'의 설계비 책정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시설의 종류(노인복지센터)·연면적(1,000㎡미만) 등 시설의 특성에 부합되는 유형별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복합복지타운 조성 (어르신행복과) 450,000천원

-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사전에 마련하여 치매어르신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모두가 행복한 복지의 롤모델 구현을 위한 사업임.
- 사업부지의 면적은 11,979㎡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에 의한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법 제38조(개발제한구역의 지정)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복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, 교통·환경·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.

- 복합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450,000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, 용역의 과업내용에는 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(기본현황분석, 입지의 적정성, 건축기본방향, 사업시행방안 등),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수립, 교통·환경·재해영향평가 검토 및 보고서 작성, 지반조사까지 포함된 용역임.
- 용역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작성한 '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'(2015)과 '201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'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(추가) (어르신행복과) 1,325,000천원

- 서초50플러스센터는 만50~64세 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설임.
- 「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2(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) 및 같은 조례 제8조(자치구에 대한 지원)에 근거하여 시비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, 시비 지원금액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(15억→5억)으로 결정되어 사업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구비 추가 확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함.
- 건립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'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(2017)'의 공사비 책정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임을 감안하여 건축비는 신축 대비 75%를 적용하였고, 설계용역비는 신축 대비 50% 수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행사지원 차량 구매(여성보육과) 75,500천원

- 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이동을 위한 운반전용차량(유개트럭)을 구매하여 원활한 행사 지원 및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- 여성보육과의 업무 특성상 각종 행사진행이 많고, 필수적인 행사용 물품 및 장비가 많아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개트럭(윙바디 3.5톤)이 필요하기에 차량 구매비와 차량유지비를 추경에 편성함.
- ▶ 주요 행사 : 권역별 벼룩시장(연 28회), 간장·된장 담그기(연 3회), 김장 행사, 새마을부녀회 행사 지원, 기타 각종 기념행사 등
- 정례화된 행사가 많은 부서의 업무특성과 업무효율성,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운반전용차량의 구매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□ 특별회계 세입·세출

-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별회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없음.

3. 종합 검토의견

- 추가경정예산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,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,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임.
-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재원으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라 하겠으나, 시설물 설치, 노후시설 개선, 시설보강 및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 관련 일부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, 위탁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(예산의 편성)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및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VI. 참고자료

1.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
2.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(조직별)
3.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
4.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(조직별)
5. 2019년도 일반회계 간주처리내역(1억원 이상)
6.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, 제127조, 제130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, 제37조, 제45조
 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1조, 제42조

[별첨1]

일반외계 세입 총괄표

2019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	예 산 액	구성비	기 정 액	구성비	비 교 증 감	
					증감률	증감률
총 계	601,333,619	100.00%	593,713,619	100.00%	7,620,000	1.28%
100 지방세수입	232,578,487	38.68%	232,578,487	39.17%	0	0.00%
110 지방세	232,578,487	38.68%	232,578,487	39.17%	0	0.00%
111 보통세	231,132,487	38.44%	231,132,487	38.93%	0	0.00%
113 지난년도수입	1,446,000	0.24%	1,446,000	0.24%	0	0.00%
200 세외수입	85,087,885	14.15%	81,207,885	13.68%	3,880,000	4.78%
210 경상적세외수입	68,313,718	11.36%	68,313,718	11.51%	0	0.00%
211 재산임대수입	340,714	0.06%	340,714	0.06%	0	0.00%
212 사용료수입	7,549,326	1.26%	7,549,326	1.27%	0	0.00%
213 수수료수입	19,862,346	3.30%	19,862,346	3.35%	0	0.00%
214 사업수입	460,721	0.08%	460,721	0.08%	0	0.00%
215 징수교부금수입	38,595,122	6.42%	38,595,122	6.50%	0	0.00%
216 이자수입	1,505,489	0.25%	1,505,489	0.25%	0	0.00%
220 임시적세외수입	16,774,167	2.79%	12,894,167	2.17%	3,880,000	30.09%
221 재산매각수입	1,070,000	0.18%	1,070,000	0.18%	0	0.00%
222 부담금	156,900	0.03%	156,900	0.03%	0	0.00%
223 과징금및과태료등	6,636,506	1.10%	6,636,506	1.12%	0	0.00%
224 기타수입	5,159,762	0.86%	1,279,762	0.22%	3,880,000	303.18%
225 지난연도수입	3,750,999	0.62%	3,750,999	0.63%	0	0.00%
300 지방교부세	12,501,800	2.08%	8,761,800	1.48%	3,740,000	42.69%
310 지방교부세	12,501,800	2.08%	8,761,800	1.48%	3,740,000	42.69%
311 지방교부세	12,501,800	2.08%	8,761,800	1.48%	3,740,000	42.69%
400 조정교부금등	24,060,642	4.00%	24,060,642	4.05%	0	0.00%
410 자치구조정교부금등	24,060,642	4.00%	24,060,642	4.05%	0	0.00%
411 지구조정교부금등	24,060,642	4.00%	24,060,642	4.05%	0	0.00%
500 보조금	191,506,805	31.85%	191,506,805	32.26%	0	0.00%
510 국고보조금등	95,306,969	15.85%	95,306,969	16.05%	0	0.00%
511 국고보조금등	95,306,969	15.85%	95,306,969	16.05%	0	0.00%
520 시·도비보조금등	96,199,836	16.00%	96,199,836	16.20%	0	0.00%
521 시·도비보조금등	96,199,836	16.00%	96,199,836	16.20%	0	0.00%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55,598,000	9.25%	55,598,000	9.36%	0	0.00%
710 보전수입등	55,598,000	9.25%	55,598,000	9.36%	0	0.00%
711 잉여금	55,598,000	9.25%	55,598,000	9.36%	0	0.00%

[별첨2]

일반외계 세출 증감표(조직별)

2019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전체

【 조직 별 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 정 액		비교증감	
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총 계	601,333,619	100.00%	593,713,619	100.00%	7,620,000	1.28%
의 회 사 무 국	4,695,409	0.78%	4,625,479	0.78%	69,930	1.51%
감 사 담 당 관	230,031	0.04%	230,031	0.04%	0	0.00%
홍 보 담 당 관	4,781,591	0.80%	4,781,591	0.81%	0	0.00%
문 화 행 정 국	181,081,328	30.11%	172,285,878	29.02%	8,795,450	5.11%
행 정 지 원 과	121,012,074	20.12%	121,012,074	20.38%	0	0.00%
문 화 예 술 과	12,165,122	2.02%	7,385,122	1.24%	4,780,000	64.72%
자 치 행 정 과	25,635,061	4.26%	22,025,061	3.71%	3,610,000	16.39%
교 육 체 육 과	21,166,298	3.52%	20,760,848	3.50%	405,450	1.95%
오-케이민원센터	1,102,773	0.18%	1,102,773	0.19%	0	0.00%
밖 은 미 래 국	122,080,822	20.30%	118,593,381	19.97%	3,487,441	2.94%
가 족 정 책 과	51,595,044	8.58%	51,251,344	8.63%	343,700	0.67%
지 역 경 제 과	1,326,121	0.22%	1,326,121	0.22%	0	0.00%
일 자 리 과	3,139,052	0.52%	2,758,385	0.46%	380,667	13.80%
어 르 신 행 복 과	66,020,605	10.98%	63,257,531	10.65%	2,763,074	4.37%
주 민 생 활 국	183,157,728	30.46%	183,082,228	30.84%	75,500	0.04%
복 지 정 책 과	12,669,115	2.11%	12,669,115	2.13%	0	0.00%
사 회 복 지 과	41,921,226	6.97%	41,921,226	7.06%	0	0.00%
여 성 보 육 과	79,674,393	13.25%	79,598,893	13.41%	75,500	0.09%
푸 르 한 경 과	766,810	0.13%	766,810	0.13%	0	0.00%
청 소 행 정 과	48,126,184	8.00%	48,126,184	8.11%	0	0.00%
기 획 재 정 국	8,685,171	1.44%	17,729,637	2.99%	△9,044,466	△51.01%
기 획 예 산 과	6,429,539	1.07%	15,474,005	2.61%	△9,044,466	△58.45%
재 무 과	534,070	0.09%	534,070	0.09%	0	0.00%
세 무 관 리 과	707,267	0.12%	707,267	0.12%	0	0.00%
재 산 세 과	634,676	0.11%	634,676	0.11%	0	0.00%
지 방 소 득 세 과	379,619	0.06%	379,619	0.06%	0	0.00%
도 시 관 리 국	26,751,079	4.45%	23,840,269	4.02%	2,910,810	12.21%
주 거 개 선 과	2,846,451	0.47%	2,846,451	0.48%	0	0.00%
도 시 계 획 과	543,380	0.09%	243,380	0.04%	300,000	123.26%
도 시 디 자 인 과	1,190,780	0.20%	1,049,970	0.18%	140,810	13.41%
건 축 과	415,514	0.07%	205,514	0.03%	210,000	102.18%
공 원 녹 지 과	21,474,767	3.57%	19,214,767	3.24%	2,260,000	11.76%
부 동 산 정 보 과	280,187	0.05%	280,187	0.05%	0	0.00%
안 전 건 설 교 통 국	39,863,421	6.63%	38,538,086	6.49%	1,325,335	3.44%
안 전 도 시 과	8,236,803	1.37%	8,187,303	1.38%	49,500	0.60%
건 설 관 리 과	2,189,839	0.36%	2,134,599	0.36%	55,240	2.59%
도 로 과	14,322,424	2.38%	13,951,424	2.35%	371,000	2.66%
물 관 리 과	11,871,589	1.97%	11,520,994	1.94%	350,595	3.04%
교 통 행 정 과	3,242,766	0.54%	2,743,766	0.46%	499,000	18.19%
보 건 소	30,007,039	4.99%	30,007,039	5.05%	0	0.00%
건 강 정 책 과	14,730,038	2.45%	14,730,038	2.48%	0	0.00%
건 강 관 리 과	11,691,175	1.94%	11,691,175	1.97%	0	0.00%
위 생 과	511,460	0.09%	511,460	0.09%	0	0.00%
의 료 지 원 과	2,602,818	0.43%	2,602,818	0.44%	0	0.00%
방 배 보 건 지 소	210,647	0.04%	210,647	0.04%	0	0.00%
꽃마을보건지소	260,901	0.04%	260,901	0.04%	0	0.00%

[별첨3]

특별외계 세입 총괄표

2019년도 추경 1 회 기타특별회계 전체

(단위:천원)

장·관·항	예 산 액		기 정 액		비 교 증 감	
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총 계	61,703,397	100.00%	61,493,397	100.00%	210,000	0.34%
200 세외수입	18,663,130	30.25%	18,663,130	30.35%	0	0.00%
210 경상적세외수입	8,387,226	13.59%	8,387,226	13.64%	0	0.00%
214 사업수입	7,610,226	12.33%	7,610,226	12.38%	0	0.00%
216 이자수입	777,000	1.26%	777,000	1.26%	0	0.00%
220 임시적세외수입	10,275,904	16.65%	10,275,904	16.71%	0	0.00%
223 과징금및과태료등	6,576,200	10.66%	6,576,200	10.69%	0	0.00%
225 지난연도수입	3,699,704	6.00%	3,699,704	6.02%	0	0.00%
500 보조금	509,043	0.82%	509,043	0.83%	0	0.00%
510 국고보조금등	160,022	0.26%	160,022	0.26%	0	0.00%
511 국고보조금등	160,022	0.26%	160,022	0.26%	0	0.00%
520 시·도비보조금등	349,021	0.57%	349,021	0.57%	0	0.00%
521 시·도비보조금등	349,021	0.57%	349,021	0.57%	0	0.00%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42,531,224	68.93%	42,321,224	68.82%	210,000	0.50%
710 보전수입등	42,321,224	68.59%	42,321,224	68.82%	0	0.00%
711 잉여금	42,321,224	68.59%	42,321,224	68.82%	0	0.00%
720 내부거래	210,000	0.34%	0	0.00%	210,000	순증
721 전입금	210,000	0.34%	0	0.00%	210,000	순증

[별첨4]

특별외계 세출 총괄표(조직별)

2019년도 추경 1 회 기타특별회계 전체

【 조직 별 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 정 액		비교증감		
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	
총 계	61,703,397	100.00%	61,493,397	100.00%	210,000	0.34%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주 민 생 활 국 </div>	320,043	0.52%	320,043	0.52%	0	0.00%	
	사회복지과	320,043	0.52%	320,043	0.52%	0	0.00%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도 시 관 리 국 </div>	210,000	0.34%	0	0.00%	210,000	순증
		건축과	210,000	0.34%	0	0.00%	210,000
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안 전 건 설 교 통 국 </div>	61,173,354	99.14%	61,173,354	99.48%	0	0.00%
		주차관리과	61,173,354	99.14%	61,173,354	99.48%	0

[별첨5]

2019년도 1억원 이상 간주처리 내역(1~6차)

【일반회계】

(단위: 천원)

연번	대상부서	간주처리내용	간주금액	비고
1	사회복지과	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지원사업)	495,407	시비
2	사회복지과	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	284,040	국비 142,020 시비 142,020
3	건강관리과	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	365,857	시비
4	복지정책과	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무요원 봉급 등 지원	124,005	국비
5	자치행정과	마을생태계 조성사업	165,070	시비
6	자치행정과	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(마을분야)	159,216	시비
7	교육체육과	혁신교육지구 운영	500,000	시비
8	안전도시과	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운영	162,000	국비
9	건강정책과	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(2~3월분)	144,532	시비
10	공원녹지과	수목식재 사후관리	161,500	시비
11	일 자 리 과	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	179,550	시비
12	문화예술과	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	220,000	시비
13	자치행정과	2019년 통합보조금(공공·작은도서관) 교부	329,160	시비

관 계 범 령

◆ 「지방자치법」

-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 2. 예산의 심의·확정
 3. ~ 11.(생략)② (생략)
- 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-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◆ 「지방재정법」

- 제36조(예산의 편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- 제37조(투자심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(이하 "투자심사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 1.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
 2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
 - 가. 채무부담행위
 - 나. 보증채무부담행위
 - 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② ~ ④ (생략)

-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 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◆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- 제41조(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(이하 "투자심사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시·도 : (생략)
 2. 시·군 및 자치구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 - 가.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
 - 나.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
 - 다.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
 - 라.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·축제 등 행사성 사업
 - ② 삭제 <2014.11.28.>
 - ③ 삭제 <2014.11.28.>
 -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2조(예산의 편성)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.